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합53162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안

담당변호사 박애성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1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전산시스템 통합, 구축, 종합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 통신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개발, 운용, 서비스 및 기타 종합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4. 11.부터 2020. 7. 17.까지 D의 대표이사였으며,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D 및 피고는 2020. 1. 22.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력업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협력업체 준수 서약서>

원고와 D(이하 '구매자')간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거래질서의 안정화를 위하여 본인(피고)은 구매자의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하며, 구매자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한다.

1. 구매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모든 거래내용에 대한 계약이행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고객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배상하기로 한다.
3. 구매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관련 제반 법령 위반 행위로 원고에 손해 발생 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구매자는 업무수행 과정 및 종료 후 보안 위반행위로 원고에 손해 발생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본인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확인 후 서명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사와 본인, 회사와 본인 소속회사간의 계약상의 책임 및 의무를 다하기 위한 협력업체 준수서약서 작성 및 제출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 시 필수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사는 위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

4)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사와 관련된 상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본인은 구매자와 연대하여 상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재차 약정하기로 한다.

2020. 1. 22.

구매자 D

본인(연대보증인) B(피고)

원고 귀중

다. D의 발주 및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D는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213,479,200원 상당의 E주차장 증축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물품 공급을 발주하면서, '납품기한 : 납품 요청 후 3일 이내, 납품 장소 : 원청사 지정 장소, 결제조건 : 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을 발주조건으로 명시하였다.

2) D는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F 주식회사 2021년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275,000,000원[= 2021년 1월 유지보수료 21,200,000원 + 2021년 2월 내지 12월 유지보수료 합계 22,800,000원(= 20,800,000원 × 11) + 부가세 25,000,000원]에 정하여 발주하면서, 유지보수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술지원 내역 : RMA, Case-Open, 주요이슈 장애처리 지원, 결제조건: 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을 발주조건으로 명시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28., 2021. 11. 30. 및 2021. 12. 30. 공급받는 자를 D로 하고, 품목을 'N/W 유지보수'로 하여 합계금액 22,880,000원(= 공급가액 20,800,000원 + 세액 2,08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D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채권신고 등

- 1) 서울회생법원은 2022. 1. 25. D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2021하합100416호).
- 2) 이에 원고는 D의 파산관재인 G에게 D에 대하여 216,119,2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이 원고의 위 신고채권액 중 68,640,000원만 시인하고, 나머지 147,479,2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가, 2022. 6. 27. 위 147,479,200원에 대한 이의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에 E주차장 증축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물품을 판매하고, F 주식회사 2021년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각 발주서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전부 납품하거나 제공하였다. 그런데 D는 물품대금 213,479,200원 중 66,000,000원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147,479,200원(= 213,479,200원 - 66,000,000원)을 지급하고 않았고, 2021년 10월 내지 12월분 용역대금 합계 68,640,000원(= 22,880,000원 × 3)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216,119,200원(= 147,479,200원 + 68,640,000원)의 채무가 있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 및 용역대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6,11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이 사건 서약서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데, 이 사건 서약서상의 보증 대상은 불확정한 다수 채무임에도 최고액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D에게 원고 주장 금액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이 사건 서약서 제2조에서 “원고와 고객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D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D와 피고는 연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배상하기로 한다.”, 제3조에서 “D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관련 제반 법령 위반 행위로 원고에 손해 발생 시 D와 피고는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4조에서 “D는 업무수행 과정 및 종료 후 보안 위반행위로 원고에 손해 발생시 D와 피고는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에게 물품 및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D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 또는 그 후에 위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및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물품 및 용역대금 등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서약서에는 원고와 D 사이의 물품 및 용역계약 내지 발주에 관하여 그 기간, 대금지급조건, 원고가 D에게 발주한 물품 내지 용역의 총 공급량 내지 총 가격,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서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서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D의 원고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이진경, 판사 이동형